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34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10.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2. 11. 접수 제1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6774500)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3,743,66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피고의 부친 D가 2021. 10. 6.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C,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청 및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망 D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C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이 사건 피고)가 자신의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모친과 형제들이 피고가 부친을 부양하고 간병할 때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해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적극 권유해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형

